

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

①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	(전화번호 :)

②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
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③ 세액공제 계산내용

가. 경영성과급 계산

⑥ 성명(생년.월.일)		⑦ 경영성과급 서면약정여부	⑧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여부	⑨ 경영성과급 금액	⑩ 성과급 합계액
A	(. . .)	여, 부	여, 부		
B	(. . .)	여, 부	여, 부		
C	(. . .)	여, 부	여, 부		
D	(. . .)	여, 부	여, 부		
E	(. . .)	여, 부	여, 부		

나. 상시근로자 수 계산

구 분	해당(직전)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												⑩ 합계	⑪ 개월수	상시 근로자수 (=⑩ ÷ ⑪)
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		
해당 과세연도															⑫
직전 과세연도															⑬

다. 공제세액 계산

⑭ 경영성과급 (= ⑩)	⑮ 공제율	⑯ 세액공제금액(⑭×⑮)
	10%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방법

1. "성과공유 중소기업"이란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을 말합니다.
2. "경영성과급"이란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을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(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우리사주 포함)으로,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한 성과급을 말합니다.
3. 나.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.5명으로 계산하되,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3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.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,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.
4. "⑩ 합계"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적습니다.
5. "⑪ 개월수"란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.
6.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보다 감소(⑫-⑬<0)한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